

보도자료

(총 22 매)

2017년 9월 13일 (수) 15: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 대표자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자련 정책팀장 채일택() / 동단협 대표 : 박운선()

카라 정책팀장 : 김현지()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법률가 단체들, ‘개 전기도살 무죄’ 파기 요구 의견서 잇따라 제출
“무죄판결 1심 결과는 심리미진·법리오인 분명, 파기되어야 당연”

○ 2심 진행중인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 관련, 무죄판결의 파기를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습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이하 ‘PNR’)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에서 13일 각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NR은 “동물보호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 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 의 경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 기절에 이르게 하는 축종별 기준과 안전절차의 일부에 불과한데, 인천지방법원은 단순히 개를 ‘감전’ 시키는 것만으로 동일하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PNR은 개 전기도살을 무죄판결한 것은 △동물에 대한 전기사용을 대부분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며 △동물보호법령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민을 방역, 위생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순천지방법원이 지난해 개의 전기도살에 대해 유죄선고한 선례가 있고, 미국의 경우 개를 전살하는 것이 ‘특별히 잔인한 행위’ 라 해석했으며, 캐나다에서도 전기봉을 개에게 ‘훈련’ 용으로 사용한 것을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PNR은 “이번 무죄 판결은 동물보호법 문언에 따른 해석 및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을 너무 가볍게 여겨, 오히려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까지 별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면서 “동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당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생을 중단 당할때에도 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 동변의 경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이 동물보

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살방법’을 ‘기절방법’으로, 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하여 좁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이를 ‘개’에게 유추적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유추해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에 고려하여 그 의미에 충실하도록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법의 취지와 내용, 체계를 오해하여 완전히 그릇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식용 또는 전염병 예방의 목적으로 부득이 가축을 죽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의 존엄에 대한 도의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법정화”하여 지극히 예외적으로 동물의 도살을 허용한 것인데 “상당한 시간동안 강한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이 개를 전기로 죽인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것이 동변의 주장입니다. 또한 동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법제명인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가축의 범위에는 원래 ‘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8년 경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의 개정 [시행 1978.6.24.] [농수산부령 제724호, 1978.6.13., 전부개정]으로 ‘개’가 제외되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개는 식용목적인 동물이 아니다, 가축과 다르다’라는 것을 밝힌 입법자의 결단이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원심법원이 ‘현실’을 운운하며 무죄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지극히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13일 동변의 의견서와 지난 8월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2017 국제수의사대회>에 참가한 수의사, 수의학자 등 전문가등 263명으로부터 받은 ‘무죄판결 파기 촉구 서명’ 등을 참고자료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 참고자료

- (1) 동변 의견서
- (2) PNR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의견서 요약본)

○ 법률가단체 연락처

- (1) 동변 : 서지화 변호사 ()
- (2) PNR : 서국화 변호사 (). 끝.

의견서

사 건 2017고합70 동물보호법위반

본 의견서를 작성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동물의 권리를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동물과 관련된 사건들에 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견을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함께 위 사건의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오니 재판에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도살한 경우, 그 도살방법이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축산

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물(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동물보호법 제10조의 해석을 개의 경우에도 유추하여 해석·적용하였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이라는 용어를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10조 제1항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항에서 ‘잔인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해석한 것과 동일하게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동물보호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관련 규정의 취지, 체계를 오해하여 그릇되게 해석하였고, 이를 ‘개’에게 위법하게 유추·적용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문언적 의미 및 관련 규정의 체계를 무시한 위법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2.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 관련규정 및 체계

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동물”이란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거의 모든 동물들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6조에서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일반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체계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동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목적에 맞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각 호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8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각 호의 유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라고 하여 ‘작위에 의한 살해’를 규정하고, 제2호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라고 하여 ‘살해되는 동물과 이를 목격하는 사람 및 동물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의 살해’를 규정하고, 제3호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해’를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죽이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포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호는 그 밖의 행위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즉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 호를 위반하면 동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국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동물을 죽인 경우,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동물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정형으로 징역형까지 두어 중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동물의 생명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여 동물의 생명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각 호의 유형별 체계를 볼 때, 기본적으로 '작위에 의한 동물 살해'를 유형화하여 작위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살해를 포섭하려는 것이고, 그 예로 '목을 매다는'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해석,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해석의 기본 원칙이 문언해석의 원칙에 따라 '인정이 없고 아주 모자람'이라는 '잔인'의 의미를 따르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취지, 내용 및 체계를 최대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동 규정에 잔인한 방법으로 예시된 '목을 매다는' 방법에 준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동물보호법 제10조 및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및 내용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제1항에서 '모

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가스법, 약물 투여, 제2호에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7호)은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조류 중 닭과 오리에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동물을 기절시켜 방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도살과정에 관하여,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고정하는 보정방법부터 기절, 방혈 방법 및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에는 기절 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방법으로 동물을 보정하여야 한다는 점, 축종별로 적합한 기절방법과 전살법의 경우 전류의 세기 및 통전시간, 기절시 이용하는 기구는 적절하게 조립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 최대한 신속하게 기절시켜야 한다는 점, 동물이 완전히 기절한 후 방혈을 시작하고 방혈을 언제 시작하여야 하는 지, 등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다른 법률이 허용한 경우, 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살처분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6조에 의거, 위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잔인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행위여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잔인하지 않고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살원칙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도살의 원칙을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고, 세부적인 방법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조와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7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도살원칙은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다른 법률에 도살이 허용된 경우는 제2항에 구체화된 바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도살이 전부로, 그 밖에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 가축의 도살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7호),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모두 지켜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 규정의 일부, 도살과정의 일부 방법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라.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관계 및 ‘잔인한 방법’의 해석

인간에게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이용의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라 제8조 제1항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에 따라 도살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10조에서 도살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법상 동물 중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도살이 허용되는 동물과 그렇지 않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명백하게 달리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과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하나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하나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그 내용이 상반되고, 그 적용대상도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잔인한 방법’이라는 용어가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10조 제1항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결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없고, 각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의 도살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7호)이 정한 일련의 방법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가 일용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이 허용되지 않는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 동 조항의 취지 및 체계를 고려하여 그 문언의 의미에 최대한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평균

인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죽이든 잔인한 방법이 아닐 수 없으며 죽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스법, 전살법 등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뿐 잔인한 방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¹⁾. 위 규정에 따라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으면서, 죽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수의학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안락사(존엄사)’ 뿐입니다. 다만, 식용 또는 전염병예방의 목적으로 수십·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안락사 시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용 또는 전염병예방의 목적으로 부득이 가축을 죽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의 존엄에 대한 도의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법정화하여 동물의 도살을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마. 원심의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법리오해

원심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도살한 경우, 그 도살방법이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개’에게 유추적용하고, 나아가 동물보호법

1)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이자 동물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비추어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죽이든 잔인한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나치의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되었다는 사실과 전기고문은 극한의 고통을 안겨주는 수많은 고문 중에서도 단연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라는 사실만 비추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제10조와 제8조 제1항의 취지와 내용, 체계를 오해한 완전히 그릇된 해석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의 도살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해석 및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7호)이 정한 일련의 방법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가 일용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 제반 관련규정이 정한 도축시 축종별 보정, 기절, 방혈 등의 방법 및 준수사항을 모두 제대로 지킨 경우에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원심과 같이 단지 가축의 도살과정 중 일부인 ‘기절 방법’ 중 하나로 나열되어 있을 뿐인 ‘전살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은 도살방법 중 ‘기절방법’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하여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에게 유추해석,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가사 원심과 같이 ‘개’에게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에 대한 해석을 유추한다 하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이 허용되지 않는 동물인 개를, ‘전살법’이 기절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를, 단지 ‘전기’로 감전시켜 죽였다는 사실만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동물도축세부규정(고시)가 규정한 ‘전살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위 관련 규정은 축종별로 보다 적합한 기절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전살법의 경우 축종별로 전류의 세기와 통전시간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전살법은 기절방법으로만 사용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는 방혈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개의 경우,

전살법의 사용대상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방법의 기준이 없다는 점, 전기로 기절시킨 것이 아니라 감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전기로 기절시켰을 때보다 상당한 시간동안 강한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이 개를 전기로 죽인 행위는 법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한수의사협회도 같은 취지로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인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위법한 유추해석금지 :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으로 도살할 수 있는 동물로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법제명인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가축의 범위에는 원래 ‘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8년경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의 개정 [시행 1978.6.24.] [농수산부령 제724호, 1978.6.13., 전부개정]으로 ‘개’가 제외되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개는 식용목적인 동물이 아니다, 가축과 다르다’라는 것을 밝힌 입법자의 결단이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 연혁 및 내용을 보면 법이 개를 가축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과 제10조도 도살이 허용된 가축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개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근거로 ‘개’가 ‘가축’과 같다고 보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의 해석을 ‘개’에게 유추해석, 적용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위배되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식용목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허용되어 있지 않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한편,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축산물인 가축의 도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한 마리도 아니고, 30여 마리나 되는 개를 죽였고, 이는 유통, 판매를 위한 개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행위였을 것인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지 않은 비위생적인 도살일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동물학대에 해당하고,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단속, 처벌하여야 할 행위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오히려 이와 같이 불법적인 ‘개식용’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용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개’를 ‘가축’과 동일하게 보아 오히려 불법을 옹호하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원심과 같은 해석은 동물보호법의 제정 목적에도 위배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여러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은 개를 잔인하게 죽여서 잡아먹는 개식용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적 비난여론이 점점 고조되자, 당시 정부는 동물보호 문제가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1991년 5월 31일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제정을 그 출발점으로, 노상에서 개를 죽이거나,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처벌수위도 높아지는 등 개식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심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의 해석을 ‘개’가 ‘가축’과 같다고 보아 유추적용 하는 것은 국민 5명 중 1명이 동물을 반려하는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뒤떨어지는 것이며,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정 목적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5. 결어

원심의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살방법’을 ‘기절 방법’으로, 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하여 좁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이를 ‘개’에게 유추적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유추해석을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과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취지 및 적용대상이 달라 ‘잔인한 방법’이 같은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도 없습니다. 개를 도살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만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 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동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문언의 의미에 최대한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마땅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작위에 의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포섭하려는 규정이라는 점,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 모든 동물 살해를 동물학대로 보아 금지하고 위반시 징역형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균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쇠꼬챙이로 개를 죽인 행위는 목을 매다는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인정이 없고 모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를 오해하고, 위법한 유추해석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12.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서울고등법원 귀중

의견서 (요약본)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2017. 6. 23. 개농장 내 도축시설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도살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잔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높으므로 해당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잔인’의 사전적 의미만을 적용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살방법은 개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동물보호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의 문언적 해석, 입법 취지, 규정체계,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결은 아래와 같이 법리 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존재하며, 항소심 법원은 반드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아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같게 취급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원심이 유추적용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동물에 대한 합법적 도살이 가능한 경우, 그 도살‘방법’에 관한 예시에 불과하다. 이 사건과같이 식용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가축’의 범위에서 개는 제외되므로(개는원래 위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85. 6. 28.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을 전부개정하면서 입법자에 의해 제외되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며, 결국 합법적 도살이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전살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구나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 기절에 이르게 하는 축종별 구체적 기준과 안전 절차(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킬 것)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돼지의 경우 규격화된 전살기를 통해 0.5초 내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되고 곧바로 방혈 절차로 이어져,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는 고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 전기도살은 개를 즉시 기절에 이르게 하는 최소 전류량이나 전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전기봉으로 단순히 개를 ‘감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마저 한 번에 기절하지 않아 전기봉으로 개의 주둥이에 수차례 통전을 하게 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가 겪어야 하는 고통과 공포감이 매우 크고 완전히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2분 이상이 걸리며 그 시간을 채 기다리지도 않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가죽을 벗겨내는 작업에 나아가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처럼 법에 규정된 ‘전살법’과 개 전기도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므로, 원심은 축종의 특성, 죽음에 이르는 시간, 고통 유발, 고통을 최소화하는 안전절차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두 ‘전살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동물이므로 다른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법규에도 없는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방법을 예시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도 아닌 개에 대한 식용 목적의 전기도살 행위 자체가 합법적인 것인지부터 판단하였어야 하며, 합법적이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지웠어야 한다.

원심 판결은 ‘전살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는데, 이는 아래 항에서 보듯이 동물에 대한 전기사용을 대부분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동물의 고통을 유발하는 도살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도살을 금지하고, 축종별로 고통을 최소화하는 세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령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동시에, ‘동물의 무차별적 도살을 금지하고,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검사 등을 거친 축산물만을 유통하여 국민들을 방역, 위생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 또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지도 않는 다른 많은 동물들에 대한 전기도살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2. 동물보호법 제8호 제1항 제1호 규정 자체로도 충분히 문언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 사건과 같은 개 전기도살은 위 규정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목을 매다는 등’이라는 대표적 행태의 구체적 예시으로써 문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미 여러 판결(대법원 2014도2477판결 등)을 통해 그 문언 자체로 충분히 해석, 적용되어 왔다. 더구나 동물보호법 제10조의 규정체계와 함께 해석할 경우, ‘잔인한 방법’의 의미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즉 ‘가해 순간 곧바로 죽음에 이르지 않고, 고통을 온전히 느끼면서 죽게 하는 행위 또는 가해 행위 전후로 불필요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위 조문의 입법연혁을 보면, 구 동물보호법(2007. 1. 26. 법률 제8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지행위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감소하고자”하는 이유로 현행 동물보호법의 위 조문 내용과 같이 개정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개를 감전사시킨 사안에 있어, 국내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6. 9. 이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고, 국제적으로도 개를 감전사하는 것은 지극히 잔인한 방법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미국 판례는 싸움에서 패한 개를 ‘전살’하는 것은 ‘특별히 잔인한 행위 (extraordinary cruelty)’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캐나다 알버타 주 법원 또한 소에게 사용되는 전기봉을 개에게 ‘훈련’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외 독일의 동물복지법, 동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등에서 동물에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전기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원심과 같은 판단으로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조문 체계상으로도 처벌불균형에 이르게 되는데, 전기봉(도구)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전기봉을 사용하

여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그 죄질이 상해를 입히는 것보다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현저히 부당하다.

이처럼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 형벌법규의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단순히 전기로 동물을 감전시키는 행위는 지극히 잔인한 방법이며, 동물이 고통없이 죽게 하는 도살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자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원심은 ‘잔인한 방법’의 문언적 의미만으로는 해석이 어렵다고 하며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보지 않았으며, 다른 안전장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장치 등이 있었는지, 당시 전기봉의 전류량, 전문가 의견 등을 더 심리하지도 않은 채 그 결론에 이른 위법이 존재한다.

3. 만에 하나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 유죄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제1호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도축 대상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까지도 그 도살행위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고 계류, 도축하는 개 농장겸 도축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검찰은 적용법조의 예비적추가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물보호법위반 행위를 빠짐없이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번 무죄 판결은 동물보호법 문언에 따른 해석 및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을 너무

가볍게 여겨, 오히려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까지도 별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법적 근거 없는 동물의 무차별적 도살을 금지하고 국민들이 섭취하는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보호하는 법률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추세 및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가고 있는 국민의식과 여타 다른 판결에 완전히 역행하는 판결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는 항소심에서라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부당한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 유죄의 죄책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합법적 도살이 허용되지 않는 동물들은 물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들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살아 있는 동안 본연의 습성에 따라 살 수 있고, 생을 중단 당할 때에도 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2017. 9. 12.

동물권 연구단체 PNR